

20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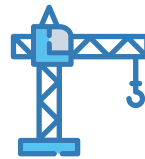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20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목차

I 옥외광고물 개요

05

1. 옥외광고물의 분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2. 옥외광고물의 특징
3. 옥외광고물의 구조

05

08

09

II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10

1. 안전점검 대상(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2. 안전점검 시기
3. 안전점검 기준

10

11

13

III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14

1. 안전점검표
2. 안전점검 결과 판단
3. 안전점검 기준 별 주요 확인 사항

14

15

16

I 옥외광고물 개요

1. 옥외광고물의 분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총 17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됨

<표 1> 옥외광고물의 종류

종류 (17종)	설 명 내 용	사 례 사 진
1. 벽면 이용 간판	□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 □ (주유기, 충전기 시설 차양 면에 명칭 표시, 상호 현수식 표시) □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 벽면,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	
2. 돌출간판	□ 판류형 간판, 이용·미용업소 표지 등을 건물 벽면에서 튀어나오게 표시	
3.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내용을 판에 표시, 모형제작 해당 공연건물 벽면에 표시	
4. 옥상간판	□ 건물 옥상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표시, 건물 옥상구조물(승강기탑, 옥탑 등)에 직접 표시	

종류 (17종)	설 명 내 용	사 례 사 진
5. 지주 이용 간판	□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부착,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표시, 군사시설, 철도, 공사현장 차폐를 위한 시설물에 표시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표시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표시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표시하여 건물옥상, 지면,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지정 게시판, 벽보판, 그 밖의 시설물에 부착 광고물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	

종류 (17종)	설 명 내 용	사 례 사 진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에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로로 표시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단면에 표시	
15. 아치광고물	☐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표시	
16.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창문,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	
17. 특정광고물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광고물	

2. 옥외광고물의 특징

-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가진 사유 시설물
 - 옥외광고물은 ‘사유시설물’이지만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 노출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옥외광고물의 노후화나 강풍으로 파손은 주변을 통행하는 공중(公衆, Public)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함
- 외부에 항시 노출
 - 옥외광고물은 외부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비, 바람, 기온의 영향으로 재료의 부식, 노후화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 특히, 건물 외벽에 달려 있기 때문에 태풍, 강풍과 같은 바람의 영향으로 옥외광고물이 탈락되거나 파손되어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표 2〉 태풍, 강풍으로 인한 간판 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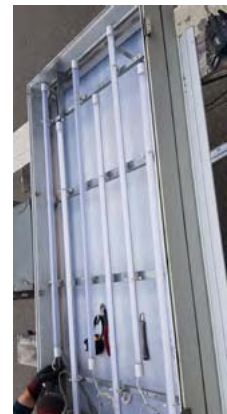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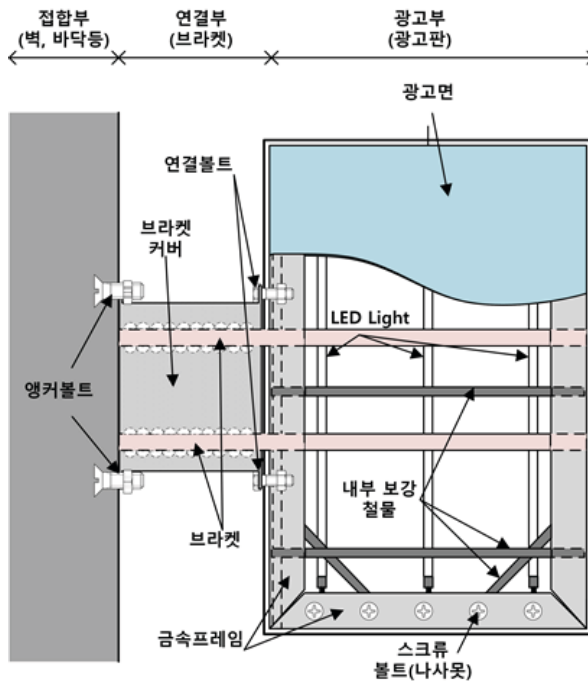


3. 옥외광고물의 구조

-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등 종류에 따라 형태는 다르나, 기본 구조는 <표 3> 및 [그림 1]과 같이 접합부, 연결부, 광고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 옥외광고 구조물의 구성

구분	설 명
접합부	□ 접합부는 옥외광고물을 달아매거나 설치하는 건물의 벽, 옥상 바닥, 별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을 말함 □ 접합부에 고정시 광고물에 부착되어 있는 브라켓 철물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연결부	□ 브라켓과 브라켓 커버로 구성되며, 접합부와 광고부를 연결하는 주요 부위로, 항시 대기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 열화에 취약함 □ 콘크리트 접합부와 연결은 앵커볼트를 사용하고 광고부와 연결부위는 일반 볼트로 고정
광고부	□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면 부착을 위해 금속을 이용해 프레임의 구성하고 플렉스(flex), 아크릴(Acrylic), 금속판 등을 부착하여 구성 □ 내부에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철물과 내부 보강 철물, LED등, 전기선이 배선되어 있음



<그림 1> 옥외광고물의 구조(돌출간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대상(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 대상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 한변 길이 10m 이상
- 돌출 간판 :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 면 면적 1㎡ 이상
- 옥상 간판 : 전체 옥상간판(높이 4m 미만의 불링핀 모형, 도료나 입체 형 표시 광고물은 제외)
-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제외)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애드벌룬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타 : 시·도 조례에 의한 광고물, 특정광고물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광고물
- 상기 광고물의 게시시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것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 24조 제 2항 제 6호 라목에 따른 **가설 울타리에 도로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 1호부터 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2. 안전점검 시기

1) 안전점검 구분

-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표시기간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태풍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실시하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으로 구분



〈그림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구분

2) 정기점검 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설치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사항과 다르게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설치한 후 사용하다가 아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표시(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점검 실시



〈표 4〉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표시기간(시행령 별표 1)

광고물 종류		표시 기간	비고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 표시기간 이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표시기간 연장 신청시 안전점검 결과 첨부
돌출간판		3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이용 간판		3년 이내	
애드 별론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안전점검 시기〉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 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4.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 허가권자(시장등)는 매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풍수해를 대비해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시기, 점검 대상, 점검 방법은 시장 등이 안전점검계획 수립시 결정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의 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옥외광고물법(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시기
 2. 점검 대상
 3. 점검 방법

3. 안전점검 기준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4

■ 점검기준

- <표 5>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4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 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지장 여부에 대하여 점검

〈표 5〉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별표 4)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애자'는 현재 전기설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천재지변 이후의 점검사항은 안전점검 기준 항목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점검 항목 필요 없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1. 안전점검표

- 안전점검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4 안전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표 6> 서식을 참조하여 사용
- 검사결과는 ‘양호’, ‘불량’을 표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점검시 조치한 경우 ‘현장시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

<표 6> 안전점검표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양호,불량)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 안전점검 결과 판단

-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자의 의견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판정. 합격, 불합격 판정 기준은 <표 7>을 참조

<표 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합격, 불합격 판단 기준

판단결과	판단 기준
합격	• 옥외광고물의 상태와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벽면, 바닥, 앵커, 브라켓과 같은 구성재료 상태가 매우 양호 • 옥외광고물의 상태가 일부 열화 되었으나 앵커, 브라켓 상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 손으로 흔들었을 때 옥외광고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 앵커가 설치된 벽면, 바닥에 균열이 심하고 깨져 있는 경우 • 옥외광고물의 프레임이나 브라켓이 심하게 부식, 파손되어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외부에 노출된 전기 배선이 복잡하고 심하게 노후 되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조치 권장, 노후 배선 조치 후 벽면, 앵커, 광고물 프레임 양호시 합격)

-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관련된 요소는 다양해서 점검 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안전점검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르며, 안전점검자는 점검업무 수행 및 결과 평가시 옥외광고물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봄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시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 6호 서식)
- 불합격한 광고물은 점검의견에 따라 보수, 철거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3. 안전점검 기준 별 주요 확인 사항

1) 기본사항/법규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8〉 ‘기본사항/법규’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점검기준 및 내용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 옥외광고물의 시설, 구조, 규격, 내용 등이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확인

2) 사용자재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9〉 ‘사용자재’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① 부식 방지 자재 사용/도장 여부

- 옥외 광고물은 장기간 햇빛, 빗물, 강풍과 같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되기 쉬움
- 특히, 광고물과 벽면을 연결하는 브라켓을 철판(Steel plate)으로 제작하는 경우 페인트 도장(Painting)을 하여 부식 예방 필요
- ※ 내식성이 확보된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아연도금 강(Galvanized Steel), 알루미늄 합금(Aluminum alloy)은 페인트 도장 불필요

〈표 10〉 옥외광고물의 주요 금속 재료 사용 사례

사용 금속 특징	광고물 사례	
강재 광고물(스틸 간판)* - 강도가 높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비중이 높아 중량 무겁고, 내식성이 낮아 도장등 부식 방지 필요	 	
스테인리스 광고물(스텐 간판)* - 내식성 및 내 마모성이 우수하고 강도 높음 - 일반인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강종은 STS304	 	
아연도금 강판(갈바 간판)* - 강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판 표면에 아연 도금 - 녹이 슬지 않고 외관이 뛰어나	 	
알루미늄 간판 - 알루미늄 자체는 무른 성질이지만 동, 망간, 마그네슘, 아연 등의 원소를 첨가하면 내식성, 내열성, 강도가 높아짐 -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건축재료로는 일반적으로 6000시리즈 사용	 	

* 표준용어는 아니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도장 면이 노후하여 벗겨진 경우에는 구조 내력상 큰 위험은 없으나 미관 개선 및 사용재료의 보호를 위해서 도장 재시공 필요
- 도장 면이 노후하고, 철재가 부식되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브라켓 커버 교체 또는 광고물 전체 교체 필요

〈표 11〉 부식방지 자재 사용/도장여부 주요 점검 사항

검사 내용 및 기준	주요 점검 사항
• 부식방지 자재 사용/도장 여부	• 브라켓/커버의 부식방지재료 여부 • 브라켓/커버의 도장 상태

〈표 12〉 부식방지 자재사용/ 도장 여부 상태 평가 사례

구분	사 례	
양호		
	스테인리스 강 사용으로 인한 부식 방지	도장면 양호
불량		
	도장면 노후화	도장면 노후화 및 자재 부식
		
	철골자재 녹 발생	철골자재 녹 발생
		
	도장면 노후화로 인한 녹 발생	도장면 노후화로 인한 녹 발생

- ②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옥외광고물을 벽면에 고정 시키는 앵커의 상태는 옥외광고물 탈락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앵커 점검시 녹 발생, 흔들림, 너트 풀림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앵커에 적은 양의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앵커 성능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수선/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점검자의 견해에 따름
 - 앵커에 심하게 녹이 발생하여 표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 앵커 일부가 빠진 경우, 앵커가 흔들리는 경우, 너트가 풀려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교체 또는 보수 하여야 함

〈표 13〉 철근 앵커볼트 사용자재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항목	주요 점검 사항
• 철근, 앵커볼트등 사용자재 상태	• 앵커의 녹, 흔들림, 너트 풀림 상태

〈표 14〉 철근, 앵커볼트 사용 자재 평가 사례

구분	사 례	
양호		
	앵커가 견고히 설치되어 유지됨	일부 녹 발생했으나 성능에 지장 없음
불량		
	앵커볼트 녹 진행, 앵커 빠짐	앵커 빠짐

구분	사 례	
불량		
	앵커 볼트 녹 진행, 너트가 없는 상태	벽면 파손 / 앵커 고정 불량
		
	앵커볼트 노후화 및 누락	앵커에 과도한 녹 발생

3) 접합부위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15〉 ‘접합부위’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① 기초부분

- 광고물이 부착되는 콘크리트 벽, 바닥은 균열, 깨짐, 부풀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함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의 벽, 바닥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게 되면 앵커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아 광고물 탈락의 원인이 됨
- 콘크리트는 타설 이후 자체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함으로 균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점검자의 의견에 따라 조치

〈표 16〉 접합부위-기초부분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항목	주요 점검 사항
- 콘크리트 표면 균열, 변형등 - 접합부문의 균열, 파손, 변형	콘크리트 벽, 바닥 균열, 파손 상태

〈표 17〉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표면, 접하부분) 사용 자재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양호 (현상유지/지속 관찰)		
	균열이 없는 양호한 상태	양호한 콘크리트 바닥 구조체
불량 (보수 및 교체 필요)		
	앵커 설치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앵커 성능 저하	기둥과 바닥 사이에 틈 발생으로 흔들림 발생
		
	벽면에 과도한 균열 발생, 앵커 성능 저하	앵커 부착 벽면 균열, 앵커 성능 저하
		
	콘크리트 바닥면 손실	앵커 부착 벽면 파손

- ②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 너트, 스크류(Screw, 나사못)의 풀림, 마모등
- 브라켓 커버에 발생한 녹은 단기간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벽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면서, 광고판 내부철물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지속되면 구조적으로 결함 발생할 수 있음
 - 브라켓 커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빗물이 유입될 수 있으며, 유입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녹/부식 발생으로 구조적 결함 발생
 - 브라켓 커버는 광고물을 벽면에 고정시키기기 위한 연결부재로 조립 스크류가 풀리게 되면 분리되어 추락 위험 발생
 - 내부철골과 브라켓의 용접부위 균열은 광고물이 브라켓에서 탈락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됨

〈표 18〉 접합부위-구성자재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해당항목	주요 점검 사항
• 접합상태, 볼트, 너트의 풀림	• 브라켓/커버, 스크류/볼트 풀림 상태 • 브라켓/커버 녹, 외부 변형, 파손 상태

〈표 19〉 접합부위-구성자재(브라켓, 볼트, 너트) 사용 자재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양호 (현상유지/지속 관찰)		
	양호한 상태의 브라켓 커버	양호한 상태의 스크류/볼트
불량 (보수 및 교체 필요)		
	브라켓 부식/열화 진행	브라켓 커버 부식 및 파손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불량 (보수 및 교체 필요)		
	스크류가 빠짐, 광고판 분리 위험	브라켓 커버 부식 및 파손
		
	지지부가 부식된 상태	광고면 접합 스크류 부식

③ 용접상태: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 광고물을 구성하는 외부/내부철골의 상태는 광고판 전체의 형상 및 내구성을 좌우함
- 외부/내부철골, 용접부위에 발생한 녹은 단기간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장기간 발생 시 단면손실로 내력 부족 발생 원인이 됨

〈표 20〉 접합부위-용접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해당항목	주요 점검 사항
• 구성자재의 변형, 휨, 균열, 파손, 부식등	• 외부/내부 철골/프레임의 녹/부식 상태, 용접부위 녹/균열 상태

〈표 21〉 접합부위-용접상태(구성자재 변형, 부식, 연결부위) 사용 자재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양호 (현상유지/지속 관찰)		
	양호한 내부 철골	양호한 외부 철골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불량 (보수 및 교체 필요)		
	내부철골 부식(옥상광고물)	내부철골 부식(옥상광고물)
		
	외부 철골 파손	프레임 부식, 파손 상태
		
	접착부위 용접 품질 저하	프레임 부식, 파손 상태

4) 전기설비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22〉 ‘전기설비’ 항목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 옥외광고물의 전기설비는 야간 사용을 위한 조명장치를 위한 것이 주를 이룸
- 조명장치의 접촉 불량은 화재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조명장치를 위한 주변기기의 변형, 파손, 열화는 발열의 원인이 되어 누전, 화재, 감전사고 발생할 수 있음
-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8%가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 광고판에 물 빠짐 구멍이 없을 경우 광고판의 이음부, 접합부를 통해 광고물 내부로 유입되는 수분은 내부 철물의 부식, 누전의 원인이 되므로 물 빠짐 구멍 설치 권장

〈표 23〉 전기설비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해당항목	주요 점검 사항
• 전기배선 상태 • 전기 연결부위 상태	• 조명의 작동 상태 • 전기배선 노후화 및 파손 상태 • 누전 차단기 설치 여부 • 광고판 물빠짐 구멍 설치 여부

〈표 24〉 전기설비(전기배선, 연결부위 상태) 사용 자재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양호 (현상유지/지속 관찰)		
	옥외광고물 개별 누전 차단기 설치	LED 조명 사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불량 (보수 및 교체 필요)		
	배선이 열화되고, 합선된 상태(불량)	형광등 홀더, 안정기 부식, 파손
		
	전기배선 노후화 및 정리 불량	옥외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미설치
		
	물빠짐 구멍(권장)	물빠짐 구멍 미 설치로 습기 발생

5) 통행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25〉 ‘통행’ 항목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과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개선, 철거 등 적절한 조치 필요

〈표 26〉 통행 상태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해당항목	주요 점검 사항
• 교통관련 시설 방해 여부 •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 광고물이 차량, 사람의 보행에 장애를 주는지 여부

〈표 27〉 통행 항목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불량 (개선/철거 필요)		
	보행 방해(불법 광고물)	보행 방해(불법 광고물)

6) 기타

○ 안전점검 기준 내용

〈표 28〉 ‘기타’ 항목 점검기준 및 내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그 밖의 사항	안전 · 미관 · 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 옥외광고물은 건물의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창/문)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은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소방관 진입 전용 창문 표시(▼)가 되어 있는 창문을 가리거나 진입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옥외광고물은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광고물의 퇴색/파손으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표 29〉 기타(안전, 미관) 주요 점검 사항

안전점검기준 해당항목	주요 점검 사항
• 안전, 미관, 광고물 퇴색	• 피난 시설(배연창/문) 방해 여부 • 광고판 외부 형태 변형, 파손 상태

〈표 30〉 기타(안전, 미관) 항목 평가 사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양호 (현상유지/지속 관찰)		
	소방관 진입 전용 창문	미관이 양호한 광고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디자인·인쇄 / 인성문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Tel : 02)3274-2114

Fax : 02)3274-2860

Tel : 02)2275-9308